

의안번호	2210473
의 퇴 인	김정재의원
회 답 일	2025.8.25.
추계번호	25B2837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가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5억원, 2031년 17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79억원 (연평균 16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(안 제34조제4항)	15	16	16	16	17	79	16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 (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	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2	안 제34조의2 신설 (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3	안 제38조제4항 신설 (지하시설물에 의 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)	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4	안 제47조 (지하안전정보체계 의 구축·운영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평 가 또는 연구·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 (제1항) 1의2.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(신설) 2의2.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 한 사항(신설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22조의2 (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 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조치 등)	×	제3호: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, 직접 긴급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 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'지반침하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'의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,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 에 위임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 하는 데 한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2	안 제34조의2 신설 (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)	○	• (제1항) 추계) 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		×	• (제3항) 제3호 －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어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관리자인 경우 안전조치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－ 그런데 이러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등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현 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3	안 제38조제4항 (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	×	• (제3호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,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긴급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, 필요한 긴급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발생건수 및 긴급한 안전조치의 필요여부, 긴급보수 등의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현시점에서 불확실하여,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47조 (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－	• 미대상: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,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사항은 현행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 －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업개요는 [참고자료 1] 참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반복적 지반침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 권고 사유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하나, 지반침하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 전망치 적용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반복적인 지반침하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비용으로,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점검대상 연장에 연장당 점검 비용을 곱하여 추산
 - (추계대상: 지방자치단체 수) 특별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지반침하 발생지역은 연 2회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(기초지자체)으로 가정하며, 최근 3년간 연 2회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기초 지자체는 연평균 34개소로 추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(%)(2025.4.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	1.9	2.0	2.0	2.0	2.0	2.0	2.0

계기간 동 수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연 2회 지반침하가 발생한 기초지방자치단체

(단위: 개소)

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
연 2회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기초지자체	32	33	39	104	34

주: 지하안전정보시스템(지반침하사고)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대상: 지방자치단체별 점검대상 연장) 지반침하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자료를 참고하여,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반침하 안전점검 평균 연장을 추산함
 - 최근 3년간 지반침하 안전점검 대상 평균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1개소당 평균 20 km로 나타나며, 동 수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지반침하 안전점검 실적: 2021~2023년

구분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
지원대상 기초지자체(a, 개소)	59	83	72	214	71
지반침하 안전점검 연장(b, km)	1,143	1,386	1,665	4,194	1,398
기초지방자치단체 당 연간 연장(b/a, km/개소)	19	17	23	20	2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특별안전점검 단가) 특별안전점검에 적용되는 기준 단가는 지하안전점검(공동)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km당 211.7만원을 적용하며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

[표 4] 단위 연장(km) 당 안전점검 사업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직접인건비	제경비	기술료	합계
비용	0.84	0.924	0.353	2.11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가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2,600만원, 2031년 16억 5,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79억 4,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지방자치단체 수(a, 개소)	34	34	34	34	34	—
안전점검 연장(b, km)	20	20	20	20	20	—
안전점검 단가(c, 백만원/km)	2.2	2.3	2.3	2.4	2.4	—
합계(a×b×c)	1,526	1,557	1,588	1,620	1,652	7,942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 사업개요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시스템 개요

-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시행 시 거쳐야 하는 지하안전평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활용, 지반침하 자료·통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

□ 주요기능

- 지하안전평가, 소규모지하안전평가,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관리
- 지하안전점검 관리
-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리
-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
- 지반침하사고 관리

< JIS 구성도 >



□ 사업비 : 2025년 6.15억원

- 시스템유지관리비(2.24억원), 시스템 위탁운영비(3.24억원), 시스템기능개선비(67백만원)

[참고자료 2] 지반침하 발생현황: 2018~2024년

(단위: 건)

시도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서울특별시	17	13	15	11	20	22	17	115
부산광역시	30	15	29	17	8	16	19	134
대구광역시	5	3	2	1	2	4	3	20
인천광역시	10	8	20	2	1	2	3	46
광주광역시	28	20	55	13	6	28	6	156
대전광역시	4	20	20	8	9	9	4	74
울산광역시	6	1	2	5	3	0	0	17
세종특별자치시	3	1	2	0	1	0	3	10
경기도	79	53	47	35	36	26	28	304
강원도	41	5	30	5	10	18	2	111
충청북도	60	6	24	2	9	10	2	113
충청남도	3	1	5	5	4	0	2	20
전라북도	5	6	7	14	40	3	2	77
전라남도	11	5	7	7	5	4	4	43
경상북도	22	1	14	12	16	8	2	75
경상남도	10	32	5	5	4	9	3	68
제주특별자치도	4	2	0	0	3	3	1	13
합 계	338	193	284	142	177	162	101	1,397

자료: 지하안전정보시스템